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46
----------	-------

발의연월일 : 2026. 4. 2.

발 의 자 : 정희용 · 백종현 · 최수진
고동진 · 박덕흠 · 박준태
조지연 · 김선교 · 강명구
박충권 · 김용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 파크골프의 수요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촌지역의 여가·복지 기반 조성에도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으로서 시설의 규모·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생활체육으로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활력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6호 신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으로서 시설의 규모·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 ⑤ (생략)	<u>치하는 경우</u> ② ~ ⑤ (현행과 같음)
------------	---------------------------------